

##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

제정	1981. 7. 1	규칙 제 8호
개정	1993. 7. 22	규칙 제 517호
	1998. 9. 23	규칙 제 722호(직제규칙)
	1999. 11. 12	규칙 제 757호(포상조례시행규칙)
	2003. 12. 23	규칙 제 828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4. 6. 25	규칙 제 834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8. 6. 16	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일부개정	2010. 12. 15	규칙 제 99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3. 5. 3	규칙 제1053호
전부개정	2018. 4. 4	규칙 제1181호
일부개정	2018. 7. 31	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	2020. 12. 22	규칙 제124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포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(이하 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① 정기 모범공무원
- ② 정년·명예퇴직 예정 모범공무원

제3조(대상)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「청원경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20. 12. 22>

- 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「청원경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2년 이내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
- 2. 「광명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「광명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

제4조(추천)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실장·과장, 의회사무국장, 직속기관의 장, 사업소장, 동장이 추천한다.

② 「광명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를 모범공무원으

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

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「모범공무원 규정」(대통령령)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포상받거나 선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5조(선발) ① 모범공무원은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. 선발 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연 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.
2.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필요시 퇴직예정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

제6조(포상금)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,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하며 포상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퇴직 또는 면직된 때
2. 징계처분을 받은 때
3.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
4. 타 시·군에 진출한 때

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(가족 포함)와 함께 산업시찰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부칙 <2018. 4. 4 규칙 제1181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모범공무원 표창: 연 1회”를 “「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: 연 1회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20. 12. 22 규칙 제124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